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셰프의국수 N 육개장
Chef's Noodle & Yukgaejang

등록번호 : 20130100377
최초 등록일 : 2013. 05. 16.
최종 등록일 : 2023. 12. 15.

fcvine@naver.com

셰프의국수 N 육개장

정 보 공 개 서

(주)바인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바인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7길 9, B03호

(양평동 1가, 영화빌딩)

대표 전화번호 : 02-3144-0850 대표 팩스번호 : 02-413-084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운영팀 / 080-850-221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바인에프 씨	세프의국수N육개장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7길 9, B03호(양평동1가, 영화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2.17	2011.02.18	김현훈	02-3144-0850	02-413-0841
	법인등록번호	110111-4536508	사업자등록번호	105-87-54160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김현훈	세프의국수N육개장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7길 9, B03호(양평동1가, 영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현훈	02-3144-0850	02-413-0841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세프의국수N육개장	전문가가 서비스하는 특별한 국수와 육개장 전문점
상 호	세프의국수N육개장 OO점	
상표(서비스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21,321	525,661	-204,340	29,958	-10,664	-8,664
2022년	320,930	510,914	-189,983	29,462	4,526	14,526
2023년	19,718	511,976	-492,257	25,592	-561,470	-301,273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현훈	대표	2011.02 ~ 현재	대표	대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1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세프의국수N육개장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점포내외사용	등록 2014.04.04	등록 4102837700000	(주)바인에프 씨	2024.04.0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3년 4월 20일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바인에프씨	세프의국수N 육개장	김현훈	2013.04. ~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7길 9, B03호(양평동1가, 영화빌딩)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세프의국수N육개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국수와 육개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계약체결일 기준)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5	0	3	3	0	3	3	0
서울	4	4		2	2		2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계약체결일 기준)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	0	0	1	0	5
2022	5	0	0	2	1	3
2023	3	1	0	1	0	3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 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6개월미만 영업제외
전체	3	406,759	19,369	572,727	28,636	240,791	10,945	※1곳제외
서울	2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매출액을 알 수 없고, 산정 가맹점 수가 적어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총 3곳 중 2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1,87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0	0	0	
광고	소계		-	-	-	
판촉	소계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동교동지점)	신사업추진부 (프랜차이즈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9-10 하나은행별관빌딩 10층	1599-1114 (에스크로 대표전화)

귀하는 가맹금을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하신후 가맹본부 (주)바인에프씨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가입하시고, 부여되는 가상 계좌에 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바인에프씨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 개월 소요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일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 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일	교육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교육 개시 후	
총계	7,700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계약이행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합계	9,7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49.5㎡)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	------	----	--------------	-------	------	----

인테리어	가맹본부	24,750	1,650	계약일:50% 완료5일전:50%		3.3㎡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부담(서울 경기 외지역 3,300 추가)
주방기기(대/소)	가맹본부	19,800			설치 전 계약취소	3차버너해면기, 음료냉장고1, 식기세척기 포함 일체
POS 임대	가맹본부	550			공사 전 계약취소	카운터 메인 POS1대, 주방프린터 1대, 영수증프린터, 카메라2채널, 비전3대
의탁자	가맹본부	3,960			공사 전 계약취소	2인 1조 330
간판/표시물	가맹본부	4,950			공사 전 계약취소	LED메인 잔넬간판 1조, 원형간판1조, 표시물, 내부실사 등
소모품/인쇄물	가맹본부	2,200			설치 전 계약취소	메뉴판, 유니폼, 현수막 등
합계		56,210	약 3,747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전기증설, 철거, 별도 화장실, 자동문, 가스, 냉난방공사, 소방공사 등

※ 추가공사 : 외부추가공사, 닥트입상, 어닝천막, LED패널 포스터간판(점주 선택 사항) 등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관리감독의 대가로 3.3㎡ 당 330천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 당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점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당 13.2	다음 월 10일	후불로 없음		아래 참조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해당 분담비용을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고지 후 7일	광고실시 전	광고실시 후	상품광고: 30대70 상품.가맹모집광고: 50대50 가맹모집광고:100대0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고지 후 7일	판촉실시 전	판촉실시 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무상지원	교육 실시 10일 이전			수시교육의 경우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1,650~11,000	간판 변경 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5]%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지정업체 협력업체	사용 실비용	매월 지정일			

※ 당사의 로열티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로열티)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품,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 기타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로열티 금액은 3.3㎡당 12,000원(VAT 별도)으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로열티 금액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단, 최초 개점일로부터 월말까지 영업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익월 로열티와 함께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로열티 연체시에는 연체된 익일부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⑥ 로열티의 경우 금액의 성질상 소멸성으로 한다. ⑦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영업권의 심각한 변화 등이 있을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에 의하여 로열티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 당사는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지정거래처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어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참조)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 경우 대체 실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교육비	2,200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픈지원 및 소모품비용	2,200	담당 바이저 파견, 유니폼, 메뉴판 등
계약이행보증금	2,000	
합계	6,4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4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상기 품목 중 상품, 원·부재료는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고 지정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경제적이익 수취여부」 참조)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제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제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제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판매제품리스트]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서면 시정요구 및 미 시정시 계약 해지 상품공급 중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제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서면 시정요구 및 미 시정시 계약 해지, 상품공급 중단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제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제품리스트] 참조		사전 공지	2023. 12월 기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수와 육개장 전문점	세프의국수N육개장	세프의 국수전 세프의 육개장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도보반경 500m(별첨이 있을 경우 별첨이 우선함) 단, 아래의 지역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선정함 1.역사 : 기차역, 지하철역 2.오피스 밀집지역 및 대단위 아파트(2천세대 이상) 3.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4.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대형쇼핑몰 : 가든파라드, 타임스퀘어, 여주아울렛 등 6.놀이동산 :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 등 7.기타 상기에 준하는 주변과는 독립적인 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역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6조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33조(참조 제25조)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2항(가맹점표시 규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의1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제15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6항(고객 외의 제3자 공급)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3.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2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5.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개점승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33조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할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42조 [계약 수정 사유]

- ① 본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7일 이내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체결 및 금액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점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비와 오픈지원 및 소모품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홍보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세프의 국수N육개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국수와 육개장을 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운영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시간이상	월 25일 이상	문의: 운영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을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기준: 49.5㎡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제품 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수 분담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제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 분담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 행사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최종 부담금 확정→행사시작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1조
④ <중간생략> 가맹점 단독 광고는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⑤ 『세프의 국수N육개장』의 광고, 홍보, 판촉 등에 관련된 인쇄물, 영상물, 기사 등의 모든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광고 및 판촉물만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은 “가맹본부”가 대여하는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손해의 배상)

- ①“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 18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W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계약체결 14일전	
점포개발 ·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승인	계약 전	
점포실측 및 설계	- 개설비용 산출	3일	8,9페이지 참조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및 보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후 15일	
가맹금 등 지급	- 계약금 협의 및 입금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후 3일 이내	6페이지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인테리어 중도금 지급(계약시 협의)	25일	
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오픈교육	5일	
인테리어공사완료	- 인테리어 잔금 지급 (계약시 협의)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맹본부”의 임직원 포함)와 “가맹점사업자”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②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다만,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관촉장려금	해당없음				
관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오픈 지원교육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기간을 연장가능하며 파견 직원 1인 을 기준
으로 하여 1일당 금일십만원(W110,000)(VAT포함)의 추가교육비를 가맹본부에게 지 급하여야 합니다.
- ※ 파견근무 시 일일 9시간을 추가할 수 없으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 수시교육은 오픈 이후 교육으로 일정, 기한,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교육	5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상시	무상지원	담당직원 방문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
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점 전 교육 미 이수할 경우, 오픈이 연기될 수 있음	11조
필수교육 미 이수할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33조
필수교육 미 이수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될 수 있음	6조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경영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상기 설비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상기의 상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상품은 강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상기 공급상품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판매제품 리스트

종류	메뉴명	권장가격(원)
국수류	잔치국수	7,000
	셰프의국수	8,500
	셰프의비빔국수	8,500
	간장비빔국수	8,500
	오징어짬뽕	8,500
	명란비빔쫄면	8,500
	들깨국수	8,500
	초게국수	9,500
	초게비빔국수	9,500
	매생이국수	8,500
	소백쌀국수	8,500
	차슈쌀국수	8,500
덮밥류	명란버터알밥	8,500
	간장불고기덮밥	8,500
	제육덮밥	8,500
	닭불고기덮밥	8,500
	새우볶음밥	8,500
	베이컨김치볶음밥	8,500
육개장류	얼큰육개장	9,000
	사골육개장	9,000
	얼큰만두육개장	10,000
	사골만두육개장	10,000
	얼큰육개국수	9,000
	사골부대육개국수	9,500
	얼큰부대육개장	10,000
	사골육개국수	9,500
사이드류	바싹튀김만두	7,500
	만두	6,000
	야채튀김	6,000
	감자고로케	6,000
	불초밥	6,000
	스파이스칠리불초밥	6,500
	갈릭마요불초밥	6,500
	칠리반마요반불초밥	6,500
돈까스류	등심돈까스	8,000
	치즈돈까스	9,000

※ 상기 판매제품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가맹점리스트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점명	점주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세프의국수앤육개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세프의국수앤육개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